

##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슈퍼아시아 증권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변경내용 : 환매수수료 변경

3. 변경적용일 : 2012년 6월 18일

4. 대비표

- 계약서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 41 조 (환매수수료)	[종류 A 수익증권]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% [종류 C1 및 C-E 수익증권]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18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%	1. 2012 년 9 월 18 일까지 환매청구시: [종류 A 수익증권]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% [종류 C1 및 C-E 수익증권]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18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% 2. 2012 년 9 월 19 일 이후부터 환매청구시: [종류 A, C1 및 C-E 수익증권] 환매수수료 없음

- 투자설명서/간이투자설명서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 2 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[종류 A 수익증권]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% [종류 C1 및 C-E 수익증권]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18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%	가. 2012 년 9 월 18 일까지 환매청구시: [종류 A 수익증권] - 30 일미만 : 이익금의 10% [종류 C1, C-E 수익증권] - 30 일미만 : 이익금의 70% - 30 일이상 180 일미만 : 이익금의 30% 나. 2012 년 9 월 19 일 이후부터 환매청구시: [종류 A, C1 및 C-E 수익증권] - 환매수수료 없음